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4. 1 선고 2020나130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4. 1 선고 2020나1309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가합549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한승철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임

변론 종결2021. 3. 11.

판결 선고2021. 4. 1.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가합549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이 2018. 6. 10.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1,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부천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 및 C과 피고 사이의 2018.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년 증서 제350호 액면금 11,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부천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한 채무변제계약을 각 408,994,5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408,994,52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2억 9,100만 원의"를 "2억 9,100만 원을"로 고쳐 쓰고,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명의신탁 토지의 매수인 명의가 K 또는 K의 지위를 승계한 C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C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 및 제8면 제12행의 각 "400억 원"을 각 "500억 원"으로 고쳐 쓰고,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 20억 원 중 10억 원은 G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인데, C이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금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G는 그 채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피고는 C을 대위하여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G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C의 G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0억 원이 G의 대출금채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G의 대출금채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G가 피고의 위 상계 의사표시가 있기 전인 2018. 9. 28.경 위 대출금 중 1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의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면의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60억 원은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로, 제12면 제9행의 "라."를 "다."로, 제13면 제5행의 "마."를 "라."로 각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1행의 "이 사건"부터 제13면 제13행의 "이므로,"까지 부분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3. 11.까지 발생한 원고의 채권액은 2억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0. 5. 4.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21. 3. 11.까지는 연 15%)이므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재환

판사임솔

별지